

2005. 7. 5.

##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



New Police, New Start!  
경찰60년

경찰청

2005. 7. 5.

##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



경      찰      청

## 목 차

### I.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안

☞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 II. 유치장의 시설·환경,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손민영(교도소 인권모임 연구원) ----- 43

### III. 유치장 사고 관련 유치인 감시 관리의 필요성

☞ 한학순(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 57

### IV. 인권친화적 유치장의 필요성과 신체수색 강화의 문제

☞ 허창영(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 69

### V. 일본유치장의 비교 및 유치장 운영의 개선방안

☞ 김성중(경찰청 특수수사과) ----- 77

황종석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한

기증의 기능 및 경비구조

각국의 유치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

각국 경찰의 유치장 운영실태

국회 유치장 운영방향

##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안

제 1

임 준 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한국의 폐허화를 경보한 척진사(일본구역)』에는 과정에서 빛어진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처해 “여도한 범죄행”이라고 본단,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가. 하물며 「화장실 간악이 높아」가 문제되자 한법제원소에서는 “한법제시 보증하는 바에 있다”면서 “들어다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違憲)”이라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1. 서 설
2. 유치장의 기능 및 설치근거
3. 한국의 유치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
4. 각국 경찰의 유치장 운영실태
5.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향
6. 결 론

본론은 유치장 운영의 기본 원칙, 유치장 운영, 경찰관의 업무를 그리고 해양국·경사

총령부의 경과를 중심으로 설명·연구하였다. 한국 경찰의 업무를 과정에서 향후

운영되는 유치장은 2000년 10월 10일 최고인민 суд(大統院) 판결로 충족판결을 떠나는 날로부터 2001

년 10월 10일까지는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2001나55948)에

제기된 청구에 따라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

운영되는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을 신하게 한 남부로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을 신하게 한 남부로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을 신하게 한 남부로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을 신하게 한 남부로

유치장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치장을 신하게 한 남부로

#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안

임준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I. 서 설
- II. 유치장의 기능 및 설치근거
- III. 한국의 유치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
- IV. 각국 경찰의 유치장 운영실태
- V.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향
- VI. 결 론

## I. 서 설

유치장에 입감될 피의자를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범집행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과도한 범집행”이라고 판단,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가 하면,<sup>1)</sup> 유치장의 「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문제되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들여다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違憲)”이라는 결정을 최근 내린 바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바 있었던 유치인 신체수색과 유치장내의 시설 및 환경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제 한국 경찰은 종래의 범집행관행과 피의자 인권보장제도, 특히 피의자신병 유치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과 인식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교방법론에 입각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필자는 수년 전 치안연구소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 각국 경찰의 수사과정상 피의자 신체수색과정 참관, 유치인 수용시설 및 경찰관서를 현지 방문하였다.<sup>3)</sup>

현지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사진자료, 경찰직무규범, 경찰관과의 인터뷰 그리고 해당국 형사사법관련 문헌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하였다. 한국 경찰의 범집행 과정에서 향후

1) 서울지방법원민사부는 「2000가합35295」 사건에 대해 2000년 11월10일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바(서울지방법원 2000. 11.10, 2000가합35295 원고일부승소) 있으며,被告 항소로 同판결은 2001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2000나59403)에서 번복되어 원고패소(국가 승소)판결이 났다. 그러자 원고의 上告로 지난 2001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2001. 10.26, 2001다51466, 원고승소, 국가배상책임인정)하는 등 사연이 많았다: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흥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 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546【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3) 필자는 1998년 1-2월 독일 푸라이부르크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스위스 바젤경찰청 산하 지구경찰서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01년 2월 미국 뉴욕시경, 휴스턴경찰청, 해리스카운티경찰청과 2001년 8월 푸라이부르크 남부지구경찰서를 각각 방문한 바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각급 경찰관서의 유치장(구치소)시설 및 관리방식 등에 한정하여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며, 본연구를 통하여 한국 경찰의 피의자 신병유치 시설에 관한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유치장의 기능 및 설치근거

### 1. 유치장의 개념과 기능

#### 1) 留置의 개념

유치라 함은 피의자, 피고인,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행위, 통모행위, 도주원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留置라는 용어는 어떤 법률에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拘禁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경찰단계에서의 미결(未決)구금장소라는 의미에서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의 미결구금장소인 拘置所와 구별된다 할 것이다.<sup>4)</sup>

#### 2) 留置場의 기능

경찰서 유치장은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혹은 긴급체포된 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임시로 留置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등 미결수를 수용하고, 기결수에 대한 자유형(구류형) 집행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설치된 행형시설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sup>5)</sup> 유치장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 데 어려움은 유치장이 미결수를 수감하는 拘置所에 準한다는 행형법 규정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결·미결을 포함한 구금의 집행에 관한 기본법은 行刑法이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者(§1의 2)는<sup>6)</sup> 구치소(§2 ③항)나 미결수용실(§3 ①항)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sup>7)</sup> 경찰서【留置場】은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 역할을 함으로써 미결수용실(혹은 구치소)의 기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법적 성격이 구치소에準한다면, 운영 및 시설 역시 구치소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확정前의 미결구금장소라는 점에서는 재판확정된 者의 형집행을 위한 교도소와 구별된다. 그렇지만 경찰서 유치장을 「구류형집행시설」로 활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행형시설-교정시설-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기관이 아닌 他

4) 장영민·박기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5), 169면.

5) 경찰청 수사국, 「유치장, 바로 암시다」(서울: 경찰청, 2001), 3면.

6) 행형법 第1條의2 (定義) ..... 2. "未決收容者"라 함은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를 말한다.

7) 第2條 (區分收容).... ③拘置所에는 未決收容者를 收容한다. 第3條 (區分收容의 예외) ①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안에 未決收容室을 둘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과정상 협조차원에서 미결구금자를 대신수용-의뢰입감-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는 代用監房 역시 성질상 「미결구금시설」이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은 구류형 집행시설(교도소) 및 미결구금시설(구치소)로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거의 일부 경찰서 유치장은 既決囚의 刑집행을 위한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유치장을 기결수용자 구금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sup>8)</sup> 수사단계의 피의자신병유치에 중점이 있는 경찰서유치장의 성질과 기능에 대해서는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 3) 유치대상자 입감절차

##### (1) 유치인 신원확인

입감 근거서류인 구속영장,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입감지휘서 등을 확인한다.

##### (2) 휴대품검사 및 영치

현금·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경찰서(경리계, 상황실 등)에 보관하고,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가족에게 연락, 반환조치한다. 혁대, 넥타이, 목이 긴 양말, 금속물(손톱깍기, 칼, 열쇠뭉치 등), 담배, 라이터 등 자해 위험물을 유치장내 보관하다.

##### (3) 신체검사

신체검사에는 ① 입감전 신체검사(신입자에 대한 신체검사) ② 입감 후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신체검사(수용중인 者에 대한 신체검사), ③ 호송출장소에서 하는 신체검사 등으로 분류된다.<sup>9)</sup> 신체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의 취지를 설명한다.<sup>10)</sup> →소지품·휴대품 자진 반납보관→가운 착용(남·녀 구분)→신체검사 실시한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유치장 관련업무를 위해서 일선 경찰관서에 지침으로 하달한 내용이다.<sup>11)</sup>

·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설치하되, 빈감방, 직원 당직실 등을 이용하여(차양막 설치) 실시하는 바, 바, 당해 경찰간부가 신체검사표에 의거, 죄명·전과·죄질 검토, 자해우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간이, 정밀신체검사 판단)한다.

· 최초 입감, 수용중, 호송출장소 등 단계별 구분 판단한다.  
· 일괄 공동 신체검사 자체하고, 개별 실시한다.  
· 특히 여성·교사·집시법·선거법위반 등 非흉악사범 관련자 신체검사시 수치심을 적게 느끼도록 유의한다.

8) 장규원, "유치장관리 개선을 위한 방향-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년 12월호, 27면.

9) 경찰청 수사국, 2001, 10면.

10) 게시된 문구; 【유치인 신체검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신체나 의복에 흉기·독극물 반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찰청 수사국, 2001, 10면 이하.

· 정밀신체검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폭언·욕설을 자제하고 꾸준히 설득하되 끝까지 거부시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신체검사시에는 흉기 등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밀 신체검사시에는 완전 나체 상태하에 가운을 입은 채로 실시한다.

이러한 신체검사는 신입감 뿐만 아니라 再입감시-조사, 접견 기타의 사유로 출감했던 피의자가 다시 입감할 때까지-에도 이를 준용한다.

#### (4) 입감 및 수용

남자·여자, 형사범·구류사범, 성인·미성년자, 풀빨, 장애인 등은 상호 분리 수용한다. 특히 입감될 者가 생후 18개월 미만의 유아 대동을 신청할 시, 함께 입감할 수 있다.

### 2. 유치장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

#### 1) 경찰관직무집행법

同法 제9조에서는 「경찰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逮捕·拘束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判決 또는 處分을 받은 者를 수용하기 위하여 留置場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되거나 자유를 제한받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경직법 제4조에 규정된 要보호자를 수용하기-보호조치-위한 보호실과는 구별된다.

#### 2) 행정법

同法 제68조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치장은 구치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3)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同法 제17조 1항에 따르면, 「.....判事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 경찰서 留置場에 유치할 것을 命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18조의 제2항에서는 「拘留는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유치장은 (구류)형집행시설이기도 하다.

#### 4)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同규칙 제3조 【구조설비】 「①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6조 【유치장소】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 및 유치장 설치·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기타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훈령 제301호)을 통하여 유치장 설계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 3. 代用監房

#### 1) 개념

검찰 등 他수사기관의 수사과정상 체포·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을<sup>12)</sup> 기관협조차원에서 대신 수용-의뢰입감-해주는 시설로서 「대용감방」을 일부 경찰관서에서 운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감방」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기결수를 수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기결수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령법 §68」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유치장을 교도소 및 구치소에 준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8 2항」 소정의 규정상 경찰서 유치장은 구류형 집행시설로 활용된다. 이때의 유치장은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경찰서 유치장이 미결수용실 내지 자유형집행시설로 활용되는 것이다.<sup>13)</sup> 비록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구속된 피의자 등과 형집행대상자인 기결수를 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유치하더라도 분리 수용해야 한다.

#### 2) 경찰관서 대용감방 설치현황

2004년 12월 현재 전국의 11개 경찰서에 검찰 등 他수사기관이 구속한 피의자·피고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용감방이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1).<sup>14)</sup>

한편, 2001년 6월 30일 당시 16개 경찰서의 대용감방에는 176개의 수용실과 1,166명의 미결구금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1인 평균 수용기간이 약 47일 정도에 이르렀다(표: 2).<sup>15)</sup> 특히 해남경찰서,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는 그 기간이 약 90일에 이르고 있어 일반구치소 및 교도소를 방불케한 바 있다.<sup>16)</sup>

(표: 1) 대용감방 현황(2004. 12. 31.현재)

구 분	대 용 감 방	유치실 수		수용인원		유치인 보호관			유치인수 (여)
		개 수	면적(평)	최대	적정	소 계	경찰	의경	
계	11개	122	782	2,337	1,558	154	93	61	437(39)
강 원	속 초	12	42	126	84	12	11	1	54(3)
	영 월	12	64	192	128	11	9	2	42(3)
충 북	영 동	7	68	204	136	13	6	7	20(2)
	정 읍	12	74	222	148	19	10	9	69(6)
전 북	남 원	10	91	273	182	14	9	5	50(3)
	전 남	10	134	402	268	15	9	6	40(5)
경 북	상 주	14	116	348	232	16	12	4	42(1)
	의 성	12	59	177	118	11	6	5	17(4)
	영 턱	8	64	192	128	11	6	5	24(5)
경 남	밀 양	12	40	111	74	16	8	8	41(3)
	거 창	13	30	90	60	16	7	9	38(4)

12) 주로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서 자체 수사과정상 체포한 피의자, 피고인이 대부분이다.

13) 경찰청 수사국, 「유치장, 바로 암시다」(서울: 경찰청, 2001), 3면.

14) 경찰청 내부자료 2005. 7월.

15) 경찰청,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서울: 경찰청, 2001), 456면.

16) 경찰청 수사국, 2001, 8면.

(표: 2) 경찰서별 대용감방 현황(2001. 6.30 현재)

경찰서	수용실 수	현재 수용인원(명)	1인 평균 수용기간(일)
합계	176개	1,166명	47(평균)
여주경찰서	14	140	47
속초경찰서	12	99	55
영월경찰서	12	75	40
충주경찰서	12	122	32
제천경찰서	12	65	17.6
영동경찰서	8	31	33.5
서산경찰서	4	27	17
정읍경찰서	12	102	30
남원경찰서	10	43	50
해남경찰서	10	76	90
상주경찰서	14	77	90
의성경찰서	12	31	60
영덕경찰서	8	25	45
통영경찰서	12	132	55
밀양경찰서	11	60	42
거창경찰서	13	61	54

### 3) 대용감방제도의 문제점

구류형집행 업무뿐만 아니라 他수사기관 위탁 미결구금자 수용관리업무(대용감방)는 명백히 準교정업무(특별예방, Spezielle Praevention-Correction)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찰고유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 할 것이다. 특히 교정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장근무 경찰관들에게는 별도의 인사상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경찰관들이 이러한 구류형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非전문성이 노정될 수 있다. 또한 교정업무를 방불케 하는 대용감방운영 등에 경찰력이 부당하게 배치됨으로써(154명) 경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sup>17)</sup>

경찰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맡으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수용자 인권침해, 수용사고 등에도 경찰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용감방에 수용된 者에 대한 급식비, 의료비 등은 경찰예산에서 충당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용감방의 기능으로서 유치장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등을 제외하면 거의 폐지한 제도라고 한다.<sup>18)</sup> 외국에서도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일정 기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개 그 기간은 24-48시간으로 그 기간 내에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그 후에는 통상의 구금시설인 구치소(Jail)에 수용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검찰로 송치된 후 당해 지역에 교정시설이 없으면 기소前에 최장 20일, 짐지어는 公訴 제기된 후 재판확정 때까지 대용감방인 유치장에서 수

17) 해남 및 상주경찰서 대용감방 미결구금자의 평균 수용기간이 90일정도라면, 이 보다 훨씬 더 장기간 수용 사례를 짐작할 수 있다.

18) 장규원, 2000, 28면.

개월씩 수용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I. 한국의 유치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

### 1. 유치인 신체검사의 실태

#### 1) 유치인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 등

행형법 제68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는 규정, 同法 제17조의 2 「①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신체, 의료, 휴대품, 거실 및 작업장을 檢查할 수 있다. ② 여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檢查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형법 시행령 제43조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檢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경찰실무단계에서는 유치인 신체수색과 관련해서 경찰청훈령(제331호 2000.10.26)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가 신체검사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sup>19)</sup>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입감되는 유치인 신체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어렵사리 찾는다면, 역시 行刑법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치인은 기결수-수형자-가 아니기 때문에 行刑법상 교도소내의 안전질서유지 목적의 신체검사와 동일시하기에는 여전히 난점이 있다. 그렇지만 구류형집행 대상자가 기결수이며, 대용감방 수용자 및 유치인이 결국 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行刑법상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치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빚어진 국가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치인 신체검사가 行刑법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sup>20)</sup>

#### 2)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의 개정

경찰은 2000년 10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소속 교사 300여명을 연행해 시내 16개 경찰서별로 분리·조사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 중부서로 연행된 8명의 교사 중 2명이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이른바, 알몸수색)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알몸수색건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sup>21)</sup> 여론의 질타가 연일 이어졌다.同事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재발방지 차원에

19) 그런데 1999년 12월 23일자 경찰청 훈령(제258호)은 지난 2000년 10월 발생한 전교조 소속 교원(집시법위반 등 피의자)에 대한 경찰서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 대판 2001.10.26, 2001다51466. 【行刑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보면...】

21) 중앙일보, 2001년 10월 17일자: 【경찰청 훈령은 '현행법의 경우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양말과 속옷을 포함

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종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sup>22)</sup> 한편, 경찰청은 연행된 교사들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알몸 신체검사시는 가운을 착용토록 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을 엄중 서면경고했으며, 관련 경찰관 3명을 사실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23)</sup> 同규칙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종전과 달리 정밀 및 간이신체검사로 구분하였으며, 정밀신체검사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새로이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체검사 장소 및 방법(가운착용)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표: 3 참조).

(표: 3)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 8조 개정 前後 관련조문비교

경찰청훈령 제258호 (1999.12.23)	경찰청훈령 제312호(2000. 8.14)	경찰청훈령 제331호 (2000.10.26)
①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그 신체에 흥기 등의 온난소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피의자의 경우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유치장 근무자는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9조에 정한 위험물의 온난여부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치장 근무자는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2000년 8월 14일 경찰청 훈령개정시 새로이 규정한 것) 제9조(위험물 등의 온난여부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 한다.)(급)에 정한 위험물의 온난여부를 檢査(検査)하되, 각호의 경우에는 精密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발부자 2. 살인·강도·강간·방화·마약류·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사람 3. 반입금지물품·휴대의심자 4.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간수자가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두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과 의복 및 양말의 속까지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흥기는 물론 독극물, 성냥, 담배 가루 등을 온닉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무 또는 당직간부의 판단에 따라 簡易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유치장 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이전에 유치인에게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유치장 근무자는 유치인에게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운을 입혀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④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는 성년의 여성 근무자 또는 여의사로 하여금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는 성년의 여성근무자 또는 의사로 하여금 실시하여야 한다.

해 알몸 수색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그러나 흥기 등 소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교사에게 알몸 검색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형법에는 '입감 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전교조측 권00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독직, 폭행죄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2) 중앙일보 2000년 10월 18일 30면: 【경찰청 "알몸수색 경관 징계": 연행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경찰의 알몸검색 논란과 관련, 경찰청은 10월 17일 현행범 유치장 입감 대상자 중 흥악범·파렴치 범을 제외하고는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유치장에 넣기에 앞서 안전을 위해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종전의 관행을 바꾸겠다■■며 ■■집시법 위반자 등 非파렴치범에 대해선 간이 신체검사만 실시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법규·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 중앙일보 2000년 10월 19일 29면 【경찰, 알몸수사 징계에 큰 반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알몸 수색' 책임을 물어 서울중부경찰서장과 경찰관 3명을 경고·징계키로 한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한 것에 대해 경찰관을 징계한다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이번에도 결국 하위 경찰관들만 당한다"는 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글이 쏟아졌다. 한 경찰관은 '앞으로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에 대해서만 알몸수색을 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파렴치범과 非파렴치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 3)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구별

형사소송법 §109 및 §291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의 '搜索'은 증거물의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할 수 있다. 한편, 生命·身體에 대한 危害防止,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유치장내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색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조치로서 영장없이 가능하며, 근거법령도 행형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sup>24)</sup> 유치장내에서의 신체검사 절차는 유치인의 안전, 危害방지, 유치장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 차원인데 반하여, 피의자 逮捕구금시 현장에서의 신체수색은 수사상의 목적, 증거물, 장물, 범죄공용물 등의 발견과 수집,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다르다.

#### 4) 정밀신체검사(일명: 알몸수색-Strip Search)의 法理

### (1) 신체검사의 목적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8조에 의하면, 유치인 신체검사의 목적은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도주방지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2) 정밀신체검사의 대상 및 방법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구속영장발부자, 살인·강도·강간·방화·마약류범죄·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自害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유치인 신체검사시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가운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할 것과 특히 여성 유치인의 신체검사시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성근무자 또는 여(女)의사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있다.

### (3) 정밀신체검사를 둘러싼 재송사례

### ① 성남남부경찰서 사례

지난 2000년 “4.13 총선거”를 앞두고, 동년 3월 24일 경기 성남남부경찰서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유인물을 뿌린 민주노총소속 여성노동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경찰서에 연행, 조사한 후 유치장에 입감시킨 바 있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후 피의자들을 재입감시키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에 대해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김모(여, 27)씨 등 3명은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상적 신체검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재입감되는 과정에서 흡기

24) 이상희, “유치장내의 신체검사에 대한 비판과 대안”, 『수사연구』, 2000년 12월호, 18면.

소지 등을 의심받을 사정이 없음에도 알몸수색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sup>25)</sup> 同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소하여 2심(고등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동년 7월 6일) 판결이 선고, 그러자 원고가 上告하여 결국 대법원(2001년 11월 7일)에서는 파기환송(원고승소판결)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 ② 서울 중부경찰서 사례

경찰은 지난 2000년 10월 14일 시위 중에 정부중앙청사에 난입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연행하여 서울시내 경찰서별로 분리,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교사 중 2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를 실시하면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바 있다. 同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정부중앙청사에 난입해 현관을 파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된 교사들이 둑비권을 행사하며 신원조차 밝히지 않아 경찰청 훈령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해명했으며, "다만 신체검색 과정에서 알몸일 경우 가운을 입히도록 돼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밀신체검사를 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다.

## ③ 서울지검 호송출장소 사례

2000년 10월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차수련(女) 전국보건산업노조 위원장이 서울지검 호송출장소에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를 받은 바 있다. 호송출장소 수감시에는 자해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치인의 신분·죄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sup>26)</sup> 同사건 후 서울구치소는 검신실(檢身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검신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sup>27)</sup>

## (4) 불완전한 신체검사 등으로 야기된 유치장사고

불완전한 유치인, 피의자 신체검사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치장 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4).

25) 서울지방법원 2000년 11월 10일 선고 2000가합35292판결내용(2000년 7월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심리증 2000헌마 327).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 등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론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者에 대해서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이....경찰공무원의 관찰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흥기나 독극물 등을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해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피고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6) 경찰청 수사국, 2001, 16면.

27) 이상희, 2000, 21면.

(표: 4) 유치장사고 사례

일시	사고 내용
1995년 4월	특수강도사건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000(21세)이 重刑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유치장 바닥틈에 있던 도루코 컷트날 조각을 주워 손목을 그어 자해한 바 있음.
1996년	필로폰투약 혐의로 수감된 000(37세, 미결수)에게 담당변호사가 접견시 필로폰이 숨겨진 습진연고 투브 1개를 건네 받아 함께 수용중인 재소자 3명과 집단 투약한 바 있음.
1997년 6월 27일	절도용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음독자살한 사건
1997년	부부간첩사건의 남파 여자공작원 강모씨는 음부에 숨겨두었던 독약앰플을 꺼내어 음독자살한 바 있음.
1998년 7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피의자가 유치장 마루바닥에 끼여있던 바늘과 비누를 삼켜 자해
1998년 7월 31일	00지검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점심시간이 되어 00지검 출장소 유치실에 의뢰 입감중이던 피의자가 출입문 감시구 3번 창살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을 대각으로 펴서 뮤은 다음 목을 매 자살.
1998년 8월 3일	소위 北風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던 前국가안전기획부장 권영해씨가 출석시 숨겨 가지고 왔던 문구용 면도칼로 복부를 그어 자해한 사실이 있음.
1998년 9월 5일	제천경찰서 유치장내 유치인 탈주사건
1999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된 000(29세)이 구속당시 필로폰 2g을 팬티 앞부분 걸감과 안감 사이에 은닉하여 입감한 바 있음.
1999년 1월	피의자들이 유치장내 담배반입을 위해 싸인펜대통, 샴푸병안, 쇼핑백바닥 등에 숨겨 반입
1999년 9월	직업안정법위반 피의자가 팬티속에 심풀담배 2개피와 가스라이터 1개를 은닉한 바 있음.
2000년 2월	특수강도죄로 서울지법에서 재판대기중이던 정필호 등 3명이 은닉하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한 사건
2000년 3월 2일	공주경찰서 유치장 유치인 自殺사건
2002년 3월 3일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유치인(남, 36세)이 유류된 양말과 내의로 80cm 가량의 끈을 만들어 유치실 내 수건걸이에 목을 매 자살. ※ 다른 유치인이 유류한 양말끈을 관리하지 못해 이를 이용 자살한 것.
2002년 3월 29일	00경찰서 유치장에서 혈행범으로 체포된 유치인(여, 31세)에 대해 입감전 고용직 여직원이 참여 신체검사시 발견치 못한 구두끈을 이용, 화장실 내에서 목을 매 자살. ※ 신체검사시 한 쪽 구두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유치인에게 이를 질문했으나 유치인이 반항하며 모른다고 하자 발견노력 중단한 사례.

이와 같이 유치장내에서 신체검사 소홀로 인한 여러 형태의 유치장사건·사고가 빈발하였다. 특히 유치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현행 유치인 신체검사 관련 문제점

유치인 정밀신체검사의 요건에 대해서 행형법,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령에서는 간이·정밀신체검사의 대상을 罪名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간이·정밀신체검사의 한계가 실무상 구분되어질 수 있는지 혹은 피의자에 대한 無罪推定 원칙상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특히 신체검사방법에는 단지 겉옷만 만져보는 방법, 속옷만 입히고 단지 쳐다보는 방법, 속옷차림의 유치인을 만져보면서 검사하는 방법, 옷을 전부 벗기고 관찰하는 방법, 옷을 전부 벗기고 신체의 구멍(體腔)을 관찰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어떤 방법이 간이·정밀신체검사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알몸수색이나 신체구멍(體腔-Cavity) 수색 등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으로 가능한 한 요건을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sup>28)</sup>

최근 유치인 알몸수색을 들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이 법적 쟁송을 자주 제기하자 경찰청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는 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유치장내의 안전·질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법령의 형식이 현재의 경찰청 훈령과 같이 실무수준이 아닌 법률형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또한 경찰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형법 등이 아닌 경찰직무관계법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장과 유치장내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의 관행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2. 유치장 시설 및 인력배치 편차 극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우, 유치실은 평균 12개실 전후(6-16)이지만,<sup>29)</sup> 각 경찰서의 치안수요(?)에 따라 면적은 크게 상이하다. 예를 들면, 유치실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경찰서의 경우는 94평에 달하지만, 가장 좁은 동부경찰서는 13평 정도이다. 유치인 적정 수용면에서 도<sup>30)</sup> 천차만별이다. 서초경찰서는 188명이지만, 동부경찰서의 경우 적정 수용인원은 2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초경찰서의 2001년 1, 2분기 1일 최대 수용인원은 각각 65명, 69명에 달했다. 2분기 최대 69명이 수용되어, 유치인 1인당 점유면적은 평균 1.36평이었다. 한편, 가장 좁은 동부경찰서의 경우(13평), 1, 2분기 1일 최대 수용인원이 각각 31명, 42명이었다. 따라서 유치인 1인당 평균 0.3평을 점유한 셈이다. 비교적 유치장면적이 넓은 노원경찰서의 경우(65평), 1분기 20명, 2분기 21명이 최대 수용되었는 바, 1인당 평균 3평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편차가 경찰서에 따라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다. 어느 경찰서에 구속·유치되느냐에 따라 유치인의 처우(수용공간)도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급 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숫자도 수용 적정인원(직무량)에 상관없이 8-10명으로 고정 배치되고

28) 이상희, 2000, 20면.

29) 동부경찰서의 경우는 유치실이 6개, 가장 많은 남대문의 경우는 16개실이다.

30) 한국 경찰실무에서는 유치장 적정 수용능력을 「유치실 1평당 유치인 2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수용능력을 1평당 유치인 3명으로 잡고 있다. 한편, 교정당국에서도 교도소내 독거체를 기준으로 1인당 적정 수용면적을 0.5평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소년원의 경우, 집단실은 1인당 1.2평, 개인실의 경우 2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수용 적정인원이 26명(최대 39명)인 동부경찰서의 경우, 경찰관이 10명 배치되어 있지만, 수용 적정인원이 188명(최대 282명)인 서초경찰서의 경우, 마찬가지로 10명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력 배치가 치안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유치장(대용감방포함)근무 경찰력 1,770여명(경찰관 1,113명, 의경 660명: 2004년 12월 31일 기준)<sup>31)</sup>이 1일 평균 유치인 3,000여명(2003년 2,907명; 2004년 2,816명)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sup>32)</sup> 경찰관 1명당 유치인 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1년 7월 말 현재, 전국의 교도소·구치소·감호소 등에 배치된 교정공무원이 11,989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청소속의 準교정직무 담당인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1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차 치안수요 증가로 유치장관련 소요인력이 증가될 것인 바, 유치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찰서 유치장을 축소/통폐합하고 「중앙유치센터」를 적극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sup>33)</sup>

(표: 5) 유치시설 및 경찰력 규모(2004.12.31.현재)

구 분	유치장수	유치실 수		04. 12.31 유치인 (여)	유치인 보호관		의경
		개 수	면적(평)		경 찰	정원	
계	233	1,638	9,009	1,709 (152)	1,783	1,113	660
유치장	222	1,516	8,227	1,272 (113)	1,677	1,020	599
대용감방	11	122	782	437 (39)	106	93	61

- 유치인 적정수용인원 : 12,000명(1인당 0.75평 - 법무부훈령, 시설기준)

\* 유치인 1일 수용사례 : 최대 6,693명, 최소 823명

- 유치인 보호관 근무방법 : 3교대 188개서, 2교대 44개서, 전일제근무 1개서

(표: 6) 유치인 수용현황(2004. 12. 31현재)

연도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1일평균 수용인원(날짜별)	2,968	2,772	3,174	2,916
년간 유치인원(개인별)	274,543	272,360	237,089	226,680

31) 경찰청 내부자료(2005년 7월1일). 한편, 2001년 7월 31일 당시에는 경찰관 885명과 의경 930명이 유치장 및 대용감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0」(서울: 경찰청, 2001), 280면 이하. 2000년 말 기준, 경찰관서의 유치장 및 대용감방에 실제 수용되었던 인원은 총 300,935명이었다.

33)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중앙집중식 유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나서, 2005년 7월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의 일부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통합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심지역의 서대문, 종로, 중부, 남대문 경찰서간 직선거리가 2km 안팎인 바, 이러한 중앙유치센터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유치인 수용시 혼거수용 일반화

유치인 등 처우에 관한 국제적 준칙인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에 의하면,<sup>34)</sup>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바, 원칙적으로 피구금자에게는 독방이 제공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2명 이상이 같은 방을 사용할 때에도 여러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5)</sup> 「유럽형사시설규칙」에서도 “피구금자는 통상 야간에 독거방에 기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거제를 천명하고 있다.<sup>36)</sup> 구금형태에 관하여 우리 「행형법(§11)」에서도 “독거제 원칙, 혼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상황과 괴리가 많다. 교정당국과<sup>37)</sup> 경찰실무에서는 독거수용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混居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장에도 독거실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원칙에 입각하여 독거제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sup>38)</sup>

물론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성인, 소년, 여성 유치인 분류수용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5조 (유치실 및 보호실)에 따르면, 유치실 및 보호실의 면적은 6.6m<sup>2</sup>(2평) 또는 13.2m<sup>2</sup>(4평)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혼거제를 염두에 둔 설계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거제 수용방식이 경찰단계 구속피의자에 대한 10일이내 구금의 경우는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지만, 일부 대용감방에 수용될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그 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에 이르고 있어, 혼거제의 폐해가 노정될 수 있다.

한편, 독거제 수용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행형법代案」 제10조 3항에서 독거실의 최소면적을 10m<sup>2</sup>(3평)로 제안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교도소의 2인 1실의 경우, 1.8m×2.7m = 4.86m<sup>2</sup>인 바, 재소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1.47평에 달한다. 한국 경찰에서는 실무상 1평당 2명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0.5평당 1명을 수용).

### 4. 전문인력 배치 필요

전국적으로 약 1,100여명의 경찰관들이 유치장 및 대용감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유치장근무가 다른 경찰일선근무에 비하여 선호되는 부서가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특수 근무부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1년 전후의 기간동안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를 한 결과에 의하면, 유치장근무에 배치되기 前 당해 경찰관에 대한 사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최근 유치인 알몸수색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시민들의 인권의식

34) 1955년 8월 30일 제1회 국제연합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한 규칙인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를 들 수 있다.

35) 박찬운/이승호 외, 1998, 148면.

36) 박찬운/김선수 외, 1993, 167면. 「유럽형사시설규칙」 제 14조.

37)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의 비율을 보면, 혼거수용이 절대적으로 많다. 1990년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행형시설에 11,165개의 수용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독거방은 4,203개, 혼거방은 6,962개로 전체 피구금자 54,989명 중 7·8%의 피구금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행형시설의 규모는 대단히 크고, 평당 수용밀도는 높다.

38) 박재윤, 1997, 77면; 박찬운/이승호 외, 「한국 감옥의 현실-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서울: 사람생각, 1998), 213면.

향상으로 입감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대두, 상급부서와 여론의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무자들의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에 의하면,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가능한 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 등 충분한 數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국제적 행형원칙과 비교하면, 한국 경찰의 현실은 매우 동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 형법 및 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구속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피의자는 형법범 60,354명 특별법위반사범 30,508명으로 약 90,000여명이 유치장에 입감된 경험이 있다.<sup>40)</sup> 他기관 위탁입감자까지 합하면, 1일 평균 5,500여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있다. 1999년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가 무려 10,000여명에 달했다.<sup>41)</sup> 특히 유치인에 대한 교화기능까지 강조되고 현시점에서 관련분야 직무전문성 제고는 더욱 긴요하다 할 것이다.

### 5. 유치장근무 여성경찰관 全無

1999년에는 313,566명의 여성이, 2001년에는 290,931여명이 각각 형법 및 형사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sup>42)</sup> 이는 전체 범죄자의 중 1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성피의자 및 유치인을 담당하기 위해 전담 근무하는 여성경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sup>43)</sup> 실무상 여성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입감될 시, 순번제로 지정된 여자경찰관을 호출하거나 심지어 기능적 여직원을 동원하여 신체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피의자가 유치장에 일단 입감되면, 이들을 유치장내에서 실제로 24시간 감시하는 경찰관은 남자경찰관 뿐이다. 최근 유치장 화장실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상이 된 것도 여성유치인이 남자경찰관의 面前에서 용변(낮은 화장실 칸막이 등으로 인한 수치심유발)을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39) 박찬운·김선수 외, 1993, 123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49조 참조.

4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0」(서울: 경찰청, 2001), 266면 이하.

4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용인: 법무연수원, 2000), 246면. 1998년에는 34,000, 1997년에는 33,000, 1996년에도 약 34,000여명이 구류형을 선고받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집행을 받은 바 있다.

4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0」(서울: 경찰청, 2001), 182면.

43) 필자가 지난 200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 유치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할 당시 구로경찰서 1곳에만 여자경찰관 1명이 정식근무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결정 사항: “청구인들이.....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중앙일보 2001년 07월 21일 29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칸막이 높여】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칸막이가 1m 이상으로 높아진다.

‘들여다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뤄진 조치다....전국 2백30개 경찰서 유치장 풍경을 바꾸게 한 이 결정은 한 여성의 ‘시민권리찾기’의 승리였다. 2000년 6월 18일 야근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서울 구로구 H社 노조원들의 새벽 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연행됐던 宋모(31.임상병리사)씨. 시위 가담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구금된 그녀는 유치장의 탁 트인 화장실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옷을 내릴 때는 건너편 남자 유치장의 ‘보호관’이 정면으로 보였고, 조그려 앓은 뒤엔 함께 수용된 미결수들과 얼굴이 마주쳤다. “높이가 40cm에 불과한 칸막이 때문에 이를 동안 제대로 용변을 보지 못했어요.” 48시간 뒤에 풀려난 그녀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2000년 8월 친구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측은 “유치장 내 자해(自害)사건 또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감시가 가능한 낮은 칸막이를 변론했다. 칸막이가 전혀 없는 미국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 53조에 의하면,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하며,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5)</sup>

독일경찰의 경우, 여성경찰관의 비율이 20%에 육박,<sup>46)</sup> 대부분의 24시간 순찰근무조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고 있으며, 뉴욕시경의 경우도 여성유치장에는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직 여자공무원이 배치되어 유치장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스턴경찰청 산하 구치소에서도 경찰관 신분이 아닌 여성 Jail Officer들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유치장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6. 질서문란자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

“유치인이 유치실내에서 소란시 대처방법”으로서, 경찰청이 제시하고 있는 교양내용은 “유치장내에서 소란시, 상황실에 긴급연락(비상벨 이용), 신속히 대처하되, 소란을 피운 유치인은 빈 유치실에서 수감도록 하고, 소란사항을 작성, 기록에 첨부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과 법원에 보고하여量刑에 고려도록 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防音獨房, 防聲具 혹은 안면보호구와 같은 제지수단은 전무하며, 소란 및 질서문란시에 대비 아무런 구체적 기준없이 막연히 “신속히 대처”하라고만 지시하고 있다.

경찰관이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와 한계, 요건에 대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며, 즉시강제수단 동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하다. 물의야기시, 개별경찰관에게 귀책사유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인 알몸수색건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인이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를 거부시 “유치인에게 신체검사 취지를 설명, 양해와 설득을 구하되”, 유치인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간이신체검사를 실시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정밀신체검사를 포기하라는식의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흥기나 禁制品, 유력한 증거물을 은닉한 惡意의 유치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신체수색여부를 유치인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IV. 각국 경찰의 유치장 운영실태

### 1. 미국 사례

의 유치장 시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1년 뒤 현재는 宋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이 밝힌 당시의 유치장 화장실은 재래식 21개, 수세식 2백8개, 좌변기가 설치된 수세식이 1백9개다. 칸막이 평균 높이는 60~70cm.  
45) 박찬운/김선수 외, 1993, 124면.  
46)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0」(서울:경찰청, 2001), 48면: 2000년말, 여자경찰관은 2,177명으로서 전체 경찰관 중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 1) 구금시설의 종류

성인범 감금을 위한 구금시설의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면, 성인범은 주로 구치소(jail), 교도소(prison) 혹은 지역에 근거를 둔 시설에 구금된다.<sup>47)</sup> 구치소와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locks-up, police detention)은 서로 구별된다.

### 2) 경찰관서의 유치장(locks-up, police detention)

- 유치장은 보통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바, 경찰서 건물 혹은 본부건물에 혹은 구치소건물과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다.
- 일시적 구금시설이다.
- 체포된 者들은 법관앞에서 구속심사를 받을 때 까지 혹은 석방될 때까지 보통 48시간 정도(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구금된다.
- 술취한 者들을 제정신이 들 때까지 수용한다.
- 부모들이 소환될 때까지 혹은 다른 장소로 옮길 때까지 청소년들을 억류시키는 곳이다.
- 미국전역에 약 15,000여개의 경찰유치장이 있다.
-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이나 유치장에서의 자살사건 등이 신문보도 등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그 숫자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48)</sup>

### 3) 구금시설내의 사고 및 관리

구치소는 대체로 직원이 부족한 편인데,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Homosex나 다른 공격행위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무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의 자살시도를 거의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성공 가능성을 또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은 구치소 수감자들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감 첫날에 그러한 자살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sup>49)</sup> 州 및 연방교도소에서 1981년부터 1982년 중반까지 120명이상의 재소자가 동료재소자에 의해 살해된 바 있었다고 한다. 同기간동안 29건 이상의 폭동 혹은 소란행위가 이러한 교정시설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그리고 또한 129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美연방교정청의 非공식 확인통계에 의하면, 1983년 연방교도소내에서 11건의 재소자 살인사건과 재소자간 359건의 폭행사건, 교도관에 대한 227건의 폭행행위가 있었고,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10건의 살해사건이 있었다.<sup>50)</sup> 따라서 교도소내의 안전과 재소자 자신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재소자들이 무기, 마약 그리고 다른 禁制品을 가장 잘 은닉하는 장소로는 수용실이다.<sup>51)</sup> 칼, 총기, 불법마약 그리고 기타 禁制品의 유입에 대해 차단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는 교

47) Reid, Sue Titus, Crime and Crimin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88), 5th Ed., pp. 483-484.

48)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5, pp. 1-2.

49) Reid, 1988, p. 488.

50) Roberson, 2000, p. 172.

51) Roberson, 2000, p. 172.

도소 관리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재소자들의 수용실을 不時에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52)</sup> 실제로 연방항소법원은 명백하게 “수용실을 무작위로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교도소내의 안전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인정했다 (679 F.2d at 1224).

#### 4) 미국 경찰관서의 구체적 사례

##### (1) 뉴욕市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 ① 알몸수색(Strip Search)

체포한 지구경찰서의 데스크경찰관<sup>53)</sup>이나 区법원 관련부서 책임자는 알몸수색이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체포한 경찰관이 그 이전의 수색방법(현장에서의 검색 등)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武器, 禁制品 혹은 증거물들이 체포된 者의 신체내부나 혹은 의복에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합리적 의심(reasonably suspects)을 하는 경우에 알몸수색이 실시될 것이다.<sup>54)</sup> 범죄의 성격(심각하고 重한 폭력범죄), 체포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명성(惡名, 극도의 폭력성 범죄인), 폭력행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수색으로 발견된 물건들이야 말로 알몸수색(strip search)의 必要性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질 다른 요소들이다.

뿐만 아니라 区법원관련부서 책임자와, 수감될 者를 신속하게 출두시키고 체포 후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을 필요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예심판사 앞에서 만나게 한다. 만약에 데스크 경찰관과 체포한 경찰관의 상급자(일선 지휘관)간에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알몸수색을 실시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은 데스크 경찰관의 관할권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데스크 경찰관들 사이에 의견이 不一致한다면, 체포한 경찰관의 감독자(상급자)가 지구경찰서장 또는 당직 警監(Captain)과 상의할 수 있다.

알몸수색은 다른 체포된 者가 없는 곳에서 최대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체포된 者와 同性인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져야 한다. 머리카락을 조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피의자의 신체를 터치할 필요는 없다. 신체의 體腔수색은 조건없이 그 어떤 경찰관에 의해서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체강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데스크경찰관

52) Roberson, 2000, p. 173.

53) 미국 뉴욕시경의 지구경찰서(precinct)의 경우, 1층 정문출입구로 통하여 들어가면 곧바로 넓은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는 바, 순찰부서의 간부(경위, 경사급)가 임석한 가운데 일반 민원과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하는 상황실 겸 지령실역할을 하는 사무실이 있다. 통상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테스크경찰관이라 한다. 특히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를 경찰관서내로 데려오면 반드시 이곳 데스크경찰관 책상위에 놓여 있는 사건대장에 피의자인적사항, 체포경위,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54) 원문: The desk officer, precinct of arrest/borough Court section supervisor will decide if a strip search should be conducted and he/she is responsible that the search is conducted properly. A strip search will be utilized when the arresting officer reasonably suspects that weapons, contraband or evidence may be concealed upon the person or in the clothing in such a manner that they may not be discovered by the previous search methods.

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sup>55)</sup> 체포된 者가 武器나 禁制品을 소지했다는 합리적 믿음이 없다면, 추가적인 알몸수색이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알몸수색은 체포를 면제하거나 소환명령장에 따라 곧바로 구금된 者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가 설치된 경찰시설내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모든 체포된 자들은 이 기계를 통과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자금속탐지기들은 아주 민감(예리)하여, 신체의 體腔안 혹은 주변에 숨겨진 금속물질을 탐지해 낼 수 있다. 금속탐지기상에서 밝혀낸다는 것, 즉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철저한 알몸수색을 위한 근거로부터 나온다.

###### ② 지하철경찰국 산하 제 20지구경찰서<sup>56)</sup> 사례

지하철경찰국(Transit Bureau) 산하 Queens지역대(Queens Borough) 제 20지구경찰서(District 20, 서장: 경감) 사례를 소개한다. 필자는 실제로 피의자 체포 및 신체수색, 입건단계에 이르는 조사 및 수사과정을 견학하였으며, 지하철안에서 체포된 남자 피의자가同じ구경찰서 유치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sup>57)</sup>

【지하철 無賃승차 혐의로 지하철구내에서 체포된 에콰도르 청년이 등 뒤쪽으로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제 20지구경찰서로 연행되고 있었다. 필자는 체포된 피의자 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찰관이 신체수색을 하고 있었으며, 신체수색시 반드시 가죽장갑을 반드시 끼고 실시(혹시 주머니 속에 있는 뾰족한 물건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착용한다고 함)한다고 하였다. 주머니, 가방 등을 상세히 수색하였다. 피의자는 현재 不法체류중이며, 결혼은 한 者이며, 부인은 미국에 와있다고 하였다. 손에 페인트가 묻은 것을 보아 방금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온 상태였다.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지폐 2장, 동전 5-6개가 발견되었다. 피의자가 메고 온 가방(Sack)에는 페인트 묻은 가죽신발, 쥬스통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관은 마약은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수색하였는데, 양말, 주머니 등을 뒤졌다. 사건 접수창구(Desk)에는 경위급 간부가 임석하면서,同절차를 관장하고 있었다. 접수데스크에는 유치장 감시카메라 4대가 작동중이었다. 수색한 물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을 확인하였다.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불가능하였다.

유치장(Police Cell)은 외부에서만 열리도록 조작되어 있는 바, 안에서는 열 수 없으며, 필 요시에 외부에서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유치장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총기를 풀어놓고 들어간다고 한다. 이유는 과거에 유치장안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피의자에게 총을 뺏겨서 사고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피의자의 옷, 신발 끈, 혁대 등 自害행위 가

55) 원문: A strip search will be conducted by a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arrested person in a secure area in utmost privacy and with no other arrestee present. It should not be necessary to touch the subject's body, except for the examination of the hair. UNDER NO CONDITIONS SHALL A BODY CAVITY SEARCH BE CONDUCTED BY ANY MEMBER OF THE SERVICE. If a body cavity search is considered necessary, the desk officer will be advised and his instructions complied with.

56) Captain Glenn A. D'Ottavio Commanding Officer Van Wyck Blvd. subway station, Main Street/Queens Blvd, Jamaica, NY 11435 PHONE: (718) 558-5417 FAX: (718) 558-5445 District 20  
57) 필자는 2001년 2월 20일 오후에同じ구경찰서에 도착하여 익일 04:00까지 견학한 바 있다.

능한 물건을 철저히 압수하여 따로 보관하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수용실 바로 앞에 조사용 책상이 놓여 있었으며, 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장 수용실에 입감시킨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에콰도르 출신이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과정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찰관이 직접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에게는 특별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同피의자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문을 채취해야 했다. 유치장안에 자동 지문채취기(AFIS)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계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잉크를 묻혀서 지문채취 가능토록 구식 보완장치가 아울러 마련되어 있었다. 보통 경찰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약 2-3시간 정도 지구경찰서 유치장(Cell)에 입감된 채로 조사가 진행된다. 그 후에는 판사앞에 데리고 가서 구속의 계속여부, 별금선고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Community Court)옆에 있는 구치소로 이송된다. 법원에 이송된 후부터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한다.]

### ③ 뉴욕경찰의 유치인에 대한 처우

식사시간은 아침은 05-06시, 점심은 12-13시, 저녁은 18-19시경에 각각 실시되고 있었다. 뜨거운 음료수(커피, 차, 뜨거운 초콜렛 등)의 제공은 금지되고 있었다. 각 개인에 대한 매개니 당 1.8달러 초과되는 것은 금지되었다. 필요한 음식의 숫자를 외부식당에 전화로 주문하면, 음식이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에 도착된다. 유치장 식당에서 취식하며, 상품권(식권)<sup>58)</sup>제도가 있었다.

### (2) 미국 휴스턴市 경찰청(Houston Police Department)사례

경찰청 조직은 크게 행정부서(Administration Coordinator: 인사, 예산, 기획, 연구, 교육, 범죄분석, 감사, 전산업무), 집행부서(Operations Coordinator: 순찰, 범죄수사, 특수수사) 그리고 지원·조정부서(Support Coordinator: 감식, 구치소-유치장-, 헬기, 교통사고조사, 특수작전 등)가 있다.<sup>59)</sup> 특히 구치소부서(Jail Division)가 설치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경감급(Captain)이다.

휴스턴市 경찰청 구치소(Jail Division)사례<sup>60)</sup>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同구치소는 휴스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법집행당국에 의해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입건, 수감 그리고 관련절차 진행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수감자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위반자를 제외한 모든 범죄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진촬영 그리고 전자신원확인을 포함한다. 구치소는 市보건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해서 입소시 및 수감기간 동안 지속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998년에는 약 119,000여명이 휴스턴市 경찰청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구치소에는 주로 정규경찰관이 아닌 civilian jailers과 분류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및 호

58) NYPD, Patrol Guide, 2000, Procedure No. 210-07

59) (그림: 1)<sup>^</sup> 참조할 것.

60) URL:<http://www.ci.houston.tx.us/departme/police>

송경찰관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으며, 주로 County 구치소로 이송한다. 구치소시설 경계지역 외부의 안전을 담당한다. 휴스턴市 경찰청 산하에는 2개소의 구치소(Central Jail, Southeast Jail<sup>61)</sup>)가 있다. 필자가 방문한 구치소는 Central Jail이었다. 이는 1951년 건축되었으며,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1998년 한 해 동안 약 69,199명의 피의자가 수감된 바 있다. 同구치소에서는 최장 72시간 혹은 48시간 신병유치가 가능하지만, 통상 24시간 이내 법정(법관의 면전)에 출두하기 전까지 신병을 유치한다. 보통 Class C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법자를 수용하며, Class B급에 해당하는 犯法者는 County Jail에 수용한다. 정규 경찰관(Sworn Officer)이 아닌, 유치장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Jail Officer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다. 유니폼도 일반 정복 경찰관과는 다른 것을 착용하고 있으며, 검정색 제복이다. 이들은 유치장 내부에서만 근무하며, 호송업무는 Uniform입은 정규경찰관이 맡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의 규모는 4명씩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실이 13개, 수십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大型 수용실이 1개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수용실이 똑같은 구조로 4개동이 있었다. 결국, 同구치소에는 4인실 42개, 대형수용실이 4개인 셈이다. 1일 평균 500-600여명을 수용한다고 한다. 每근무 교대시마다(주간, 야간, 심야: D, E, N) 50-70여명의 Jail Officer들이 근무한다. 경찰관들은 每근무마다 경위급 1명, 경사급 10명, 8명의 호송경찰관이 근무하며, 총 80여명이었다. 그 외 일반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수감자 진료문제와 관련, 경찰서 소속 의사 배치되어 경미한 것은 유치장내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경찰예산에서 충당된다. 重한 상처라든가 질병에 대한 치료는 County Hospital에 인계하며,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재판정 출두시 수갑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족쇄(Leg Iron)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른 순찰경찰관의 설명에 의하면, 상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 순찰경찰관의 경우도 피의자의 강력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서 족쇄사용이 가능하며, 유치장에서도 외부로 진출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사진촬영한 바 있음). 州교도소(State Prison)수감자는 흰색(White), Jail 수감자는 오렌지색(Orange Color),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는 사복을 착용한다.

### (3) 해리스카운티 보안관실(Harris County Sheriff Department)

해리스카운티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곳이다(오렌지카운티, 로스-엔젤레스카운티 다음). 인구는 약 3백만이 넘는다. 해리스카운티는 텍사스주내에 있으며, 휴스턴市를 둘러싸고 있다. 同보안관실 산하에는 순찰국, 기술지원국, 인사국, 수사국, 유치인관리국(Inmate Housing Bureau 701, Inmate Housing Bureau 1301), 기획·평가국, 의료서비스국 등 8개 局(Bureau)이 설치되어 있다. 필자는 1301과 701 Inmate Housing Bureau를 방문한 바 있다.

701 North San Jacinto 구치소는 최신식 구금시설로서, Buffalo Bayou를 따라 1.5에이커

61) Southeast Jail은 1993년 개소하였으며, 1998년에 약 49,686명의 피의자가 수감된 바 있다.

면적위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구금시설중의 하나이다.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00여명의 추가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전체 시설물의 면적은 650,000평방 피트가 된다. 과거 이 건물은 원래 휴스턴터미널의 창고 겸 냉동저장소였다. 1920년대 후반에 건축되었다. 새로운 구치소 프로젝트가 1989년 완성되어, 현 시설은 1991년 5월에 완성되었다. 1991년 7월에 들어서, 피구금자들이同건물에 입소하기 처음 수감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인 개소식은 8월에 있었다. 총공사비(The final cost of the project)는 8천 4백만 달러였으며, 수감자 1인당(per bed) 소요된 비용은 20,000달러였다. 이 비용은 전체 미국 평균 비용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다.

Sheriff Department Police Detention이라고 불리운다. 통상 24-72시간 범위내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유치한다. 長期인 경우, 9-18개월까지도 가능하며, 구치소 기능과 刑執行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Class B급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하는 시설이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3,315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8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보통 1방에 24-48명 수용하며, 罪質에 따라 분류 수용한다. 24명이 수용되는 수용실 내부에는 철재로 된 2인용 침대 Set, 변기 3개, 샤워기 2개, TV 1대, Collect Call만 되는 공중 전화기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화료는 비싸다고 한다. 3시간 짜리 징벌방(1인용)에는 모포가 없었으며, 변기 및 시멘트로 된 침대와 샤워기 설치되어 있다. 염증한 시정장치가 된 별도의 독방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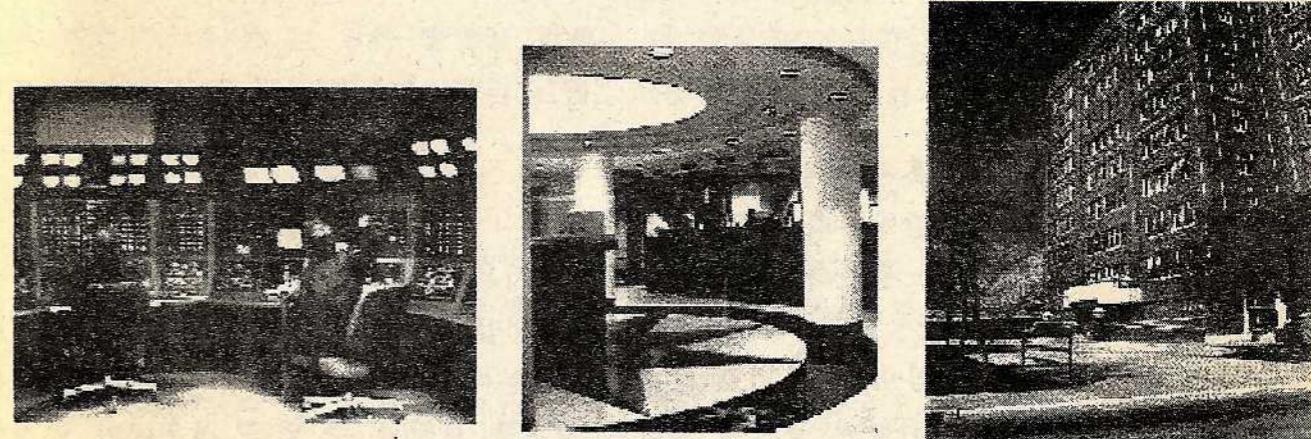
별도의 운동시설(배드민턴)이 있었으며, 1주에 2번 끌로 운동을 실시한다. 잡지, 신문 및 TV시청은 22:00시까지 가능하였다. 전문교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 운동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입감시 원칙적으로 Complete Search(Strip Search를 의미)를 실시하며, 유치인당 하루 평균 식비는 42달러, 1인당 연간 20,000달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도는 미국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한다. 同구치소내에서는 입감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바, X-Ray촬영 및 혈압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600여명의 정규경찰관과 150여명의 Jail Officer가 근무하며, 교대근무(주·야·심야: D, E, N)는 1일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감자에 대한 별도의 일과시간표는 없었으며, 형집행 대상자(수형자)에 대하여 교정 작업을 부과한다. 그리고 刑이 확정된 者는 State prison (주교도소)으로 이송된다.

신병인수실(일명 접수실)에서는 선을 따라서 벽에 기대게 하고 신체수색을 실시한다. 同구치소에서는 Orange Color유니폼을 착용하게 된다. 피의자별 신상확인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질문 후 이들을 분류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식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유치인들이 운영하는 Shoe shine(구두닦기, 돈은 유치인에게 지불한다)과 이발소가 있었다. 유치장 내부는 원형감옥실을 연상하게 하였으며, 유치장은 대부분 5, 6, 7, 8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중앙에서 CCTV를 통해 원격조정(사진참조)되고 있는 바, 안전과 도주방지를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층별 버튼이 없었다. 해당하는 層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중앙에서 확인 후 자동으로 개폐하는 방식이었다. 피의자가 도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여자용 수용시설도 관람하였다(원래 외부인에게는 관람이 금지되어 있다고 함). 변호인접견시 시간

에 제한이 없지만, 가족 面會의 경우는 당일 1회에 한하여 15분간 허용된다.

重罪人 유치실, 독방을 견학했으며, 법원으로의 출정통로를 직접 확인하였다. 외부출정(법정출두) 갔다 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체수색이 실시된다. 私服 혹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다녀온다. 별도의 개인용품 보관실이 있었으며, 자동화 시스템이다. 거대한 세탁소 옷 보관장소를 연상케 하였다.

County Court, District Court는 구치소에 인접하여, 수감자들의 動線이 짧았다. 즉, 보안관실 소속(Sheriff Department) 구치소와 지역법원과는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문채취실은 컴퓨터로 자동화, 사진촬영과 동시에 확보된 지문 Data는 州정부차원에서 보관, 관리된다. 여러 건물들이 상호 인접하여 피의자, 피고인 호송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들도록 설계하였다.



(사진설명: 해리스카운티 701구치소내부 및 외부전경)

## 2. 독일 사례

### 1) 서설

독일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된 후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面前에 피의자신병을 출두시킨 후 법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그 기간은 보통 24시간 정도이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병은 州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인(Justizvollzugsanstalt)인 구치소로 이감된다. 통상 형확정前 단계의 피의자·피고인 구속을 審理拘禁(Untersuchungshaft)라고 부른다. 경찰단계에서는 피의자를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경찰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일정도 구속할 수 있는 한국경찰과는 그 사정이 매우 다르다. 경찰단계의 유치장(Polizeizelle)과 심리구금단계(구치소)의 피의자 유치에 관한 부분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구금시설내에서의 안전조치(Sicherungsmaßnahmen)

교정시설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독일 행형법(§82,

§83, §161)에서는 일과시간표 등 수형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법률이나 所內규칙(Hausordnung)으로 제정하여 수형자가 이를 주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수형자의 거실(Haftraum)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색(Durchsuchung, §84), 위험한 수형자의 격리 또는 독거수용(§85, §89), 체포·결박 기타의 특별 안전조치(§87, §88, §90) 등으로써 위험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셋째로 다른 방법으로써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과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로써 작용하는 직접 강제(§94이하)를 행하고, 넷째로 수형자의 선행에 대하여는 포상을 행하는 반면,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벌(§142이하)을 가한다.

행형법 §88상의 특별한 안전조치에 따르면, 재소자의 태도 혹은 정신적 상태에 관한 이유를 토대로, 고도의 도주우려, 다른 재소자나 물건에 대한 폭력행사우려, 自殺 및 自害우려가 있을 시에는 재소자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62)</sup>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허용되는 바,

- ① 압류 및 대상물의 유치,
- ② 야간감시,
- ③ 다른 재소자와의 격리,
- ④ 자유로운 체류의 박탈 혹은 제한,
- ⑤ 특별한 안전조치가 된 감방에의 수용,

그리고 포박(Fesselung) 등이다. ①③④⑤등의 조치는 도주의 우려 혹은 시설내질서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달리 피하거나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고도의 도주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외부로 나갈 때, 외부에서 들어올 때 혹은 이송(호송)할 경우에는 포박이 허용된다. 완화된 조치를 통하여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만 엄격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행형법 제 89조에 따르면, 특별한 조치를 위해서 24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독방감금(Einzelhaft)- 할 수 있다. 재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격리수용(독거구금)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바, 재소자가 다른 사람들과 혼거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독거구금이 1년에 총 3개월 이상 지속할 시에는 감독관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기간은 재소자가 예배나 자유 활동에 참

62) 심리구금집행령(Untersuchungshaftvollzugsordnung:UVollzO, 법무부령) Nr. 62에 따른 특별한 안전조치로 ① 심리구금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거나 혹은 시설내 질서유지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수단으로 이를 피할 수 없거나 제거할 수 없을 때에 피구금자에 대해서, 특별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② 피구금자의 태도 혹은 그의 정신상태를 근거로 고도의 도주우려가 있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력행사 우려, 자살 혹은 자해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들이 주로 허용된다. ③ 특별한 안전조치는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 혹은 교도소장, 기타 공무원 그리고 재소자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다. 그러한 긴급한 조치들은 나중에 법관의 승인이 필요로 하며,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Nr. 63에 따라 허용되는 특별한 안전조치로는 주로 다음의 것들이 고려된다: ① 피구금자의 물건 및 그의 수용실에 대한 강화된 수색 ② 필요한 경우에 수용실의 차폐된 常時燈으로 야간에 감시하는 것 ③ 신중한 교정작업분배, 특별히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과 수용실 외부에서의 작업을 금지시키는 것 ④ 나쁜 의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혹은 도주 혹은 자살기도를 위해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물건들이나 의복에 대한 박탈 및 유치 ⑤ 자기 자신의 의복과 세탁물을 사용할 권리의 거부 혹은 박탈 ⑥ 옥외에서 매일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 ⑦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고 중지시키는 것과 외부세계와의 접견교통에 대한 예외없는 감시 ⑧ 한 수용실에 믿을 만한 재소자 함께 수용하는 것 ⑨ 위험한 물건이 없이 안전조치가 잘 된 수용실에 수감시키는 것 등이다.

가하는 경우에 중단되지 않는다.

행형법 §90 (포박)에 따르면, 포박은 일반적으로 손이나 발에만 가능하다(수갑 혹은 족쇄). 재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교도소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 포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포박은 필요한 경우에 가끔(때때로) 부드럽게(느슨하게)해야 한다. 재소자를 사슬에 묶는 것은 아주 특별히 단호한 안전조치라고 한다. 입법자는 이를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는 바, 사슬에 묶는 행위는 오로지 손이나 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함부르크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쪽은 손, 다른 한쪽은 다리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 것을 가지고 묶은 경우이다. 그리고나서 재소자에게 옷을 입혀서 그 사슬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인 데, 그렇게 되면 재소자가 제대로 빨리 걸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슬은 재소자에게 덜 단호하고, 다른 사람 눈에 덜 띄게 하는 안전조치이다. 그래서 특별히 외부로 나갈 때 이 방법이 실시된다. 이러한 방식은 재소자에게 특별한 實益이 있을 때 선택되는 방식이다. 물론 재소자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이 방식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의 사슬 묶기가 가능한 바, 재소자의 自害방지를 위해서 합당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sup>63)</sup>

### 3) 미결구금 시설의 기준

행형법(Strafvollzugsgesetz) §143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금시설의 크기, 면적, 창문의 材質, 충분한 환기시설 등 외부생활조건과 유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44조에 따르면,

- 재소자의 공간, 즉 휴식, 여가를 즐기는 동안의 공간(수용실)이나 심지어 공동생활, 면회실 등의 공간은 재소자가 거주하기에 합당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만약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수용실 공간 부족은 현법위반이 된다(BVerfG NStZ 1993, 404). 수용실의 공간은 충분한 공기의 質(Luftinhalt),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온방장치, 환기장치, 바닥면적, 창문면적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거주하기에 합당하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외부에서 생활하는 정도에 비례한 기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간단한 학생기숙사 (Studentenbude) 수준을 말한다.<sup>64)</sup> 오래된 수감시설이 무조건 전기 설비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창문이 설치된 수용실은 유리벽(Glasbaustein)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또한 창문은 외부공기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키펜(kippen)할<sup>65)</sup>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외부공기를 필요로 한 경우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깥쪽을 향해 잠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연방법무부는 연방 上院의 동의를 얻어 공기의 질, 환기, 바닥 및 창문의 면적 또는 온방장치 그리고 그러한 공간의 설비에 대하여 법규명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63) Hoeflich/Schriever, 1998, p. 121.

64) Hoeflich/Schriever, 1998, p. 47.

65) 독일의 일반주택, 사무실의 대부분 창문들은 비스듬하게 경사진 모습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독일 행형법은 거실(Haftraum, 수용실)의 필요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代案 제 10조 3항에서는 독거실의 최소면적을 10m<sup>2</sup>로 제안하였다.<sup>66)</sup> 충분한 氣積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난방, 통풍시설 및 밑바닥과 창문면적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한 판례에 따르면(KG ZfStVo 1980, 191), 【충분한 氣積(hinreichend Luftinhalt)】에 관하여 19.84 m<sup>2</sup> 기적을 가진 독거실에 2명의 수형자를 수용한 것은 기본법 제 1조에 규정된 인간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므로 違法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유사한 판례로서 OLG Zweibrücken NStZ 1982, 221 f.)<sup>67)</sup>】

#### 4) 미결구금자 등 처우

경찰서 유치장에 24시간 정도 수용되는 유치인에 대한 별도 처우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계법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 대체로 미결구금수용자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심리구금:U-Haft」에 관한 규정과 행형법이 준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결구금자 역시 교정시설에 구금·수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미결구금자 등 접견 및 면회

미결구금자의 면회는 변호인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가족인 경우는 1일 1회 30분이내이다. 적어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 한편 기결수인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에 1시간 정도는 면회시간을 갖는다(행형법 §24 1항).

독일 행형법은 최소한 월 1시간 정기적인 접견을 유치인 등의 권리로 규정하고 접견대상자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가족이나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과의 접견이 허용된다. 유치인 등은 정기적으로 외부인과의 면회를 할 수 있다(§25). 접견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때 혹은 미결구금자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복귀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교도소장 등은 시설내의 안전 및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면회를 거부할 수 있다. 교정시설내의 규율과 질서의 문란 때문에 수형자 또는 직원의 생명·신체가 위태롭게 되면, 행형목적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가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행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sup>68)</sup> 안전상의 문제를 근거로 면회객에 대해서 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25), 교도소 등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면회객을 감시할 수 있다. 면회객과의 대화에 대한 감시는 이러한 안전과 질서유지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27). 면회실(Besuchsraum)은 유리로 격리되어 있지 않고 탁자에 같이 앉아 자유롭게 담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과일, 초콜렛, 과자, 훈제품(燻製品) 등 물건의 수수도 가능하다.<sup>69)</sup>

<sup>66)</sup> Kaiser/Kerner/Schöch, Strafvollzug,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83, p. 120; 박재윤, 1997, 77면에서 제인용.

<sup>67)</sup> Kaiser u.a., 1983, p. 120; 박재윤, 1997, 77면 제인용.

<sup>68)</sup> 박재윤, 1997, 116면.

<sup>69)</sup> Kaiser u.a., 1983, p. 152; 박재윤 1997, 90면에서 제인용

#### (2) 호칭문제

심리구금집행령(Untersuchungshaftvollzugsordnung:UVollzO, 법무부령) Nr. 19 (호칭)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장 등이 16세 미만의 피구금자를 위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피구금자에게는 “귀하(당신, 존칭 Sie)”가 사용되어진다.<sup>70)</sup> 시민들간의 삶에서는 통상적인 호칭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 (3) 식료품 등의 반입

식료품, 음료수와 함께 기호품의 자변을 허용한다(행형법 §22 1항). 다만 구금시설 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물건(예를 들면, 주류, 가루로 된 조미료 등)은 제외되며, 건강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물품도 의사의 지시에 의거 금지할 수 있다(§22 2항). 재소자는 자신의 經費로 교도소를 통하여 제공되는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들, 즉 기호식품,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교도소는 이러한 음식물 제공시 재소자의 요구와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음식물 제공시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의사의 처방 내지는 지시에 근거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거부할 수 있다(§24).

#### 5) 구체적인 경찰관서 사례

필자가 방문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푸라이부르크경찰서의 사례를 살펴본다. 同경찰서에는 5개소의 지구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푸라이부르크 시내를 관할하는 북부지구-, 남부지구경찰서(Polizeirevier-Nord와 Polizeirevier-Süd)를 방문하였는 바, 시설은 대동소이하다. 체포된 피의자는 지구경찰서 순찰과에서 관리하는 경찰서유치장(Polizeizelle)에 입감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기간은 최대 24시간이내이다. 기히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면전에서 구속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구속(심리구금)영장(Haftbefehl)이 발부되면,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의 법무부소속 교정기관인 구치소로 신병이 이송된다.

실무자의 설명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반드시 실시하고, 목록확인 수색이 병행된다. 수감기간 동안의 자해, 자살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특히 수용실내부는 방탄유리창, 목재침대, 스테인레스재질의 화장실변기, 엄중한 시정장치로 된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수용실은 1인 1실 원칙이다(독거제). 수용실 내부에 어컨과 같은 냉방장치는 없으며, TV나 샤워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용실 천장벽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법정으로 피의자 호송은 전적으로 경찰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장관리는 每교대 근무조(5부제) 중에서 내근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유치장을 순찰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유치장근무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순찰부서에 담당하고

<sup>70)</sup> 독일어 2인칭대명사로 du와 Sie가 사용되는 바, Sie의 경우에는 “당신 혹은 귀하”와 같은 존칭이며, du는 “너”라는 표현이다.

있다. 수사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유치장내에서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 문제는 경찰서에서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은 병원에서 사회보장차원에서 처리된다.<sup>71)</sup> 변호인 접견, 가족 면회 등은 행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토대로 실시된다. 독일의 경우, 檢察(Staatsanwaltschaft) 주재하의 수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검사에 의한 拘束場所監察制度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영국 사례

#### 1) 경찰서 유치장의 개념

경찰서내의 留置(Custody)는 PACE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34조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은 118조 2항에서 어떤 사람이 체포된 後에 경찰서로 이송되어온 혹은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된 사람에 있는 곳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sup>72)</sup>

그러나 법정에 기소된 이후의 피고인은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의 개념은 죄를 저지를 것과 관련되어서 구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1984년 제정된 PACE에<sup>73)</sup> 따르면, 체포된 사람만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4)</sup> 추방 혹은 이송되기에 앞서 경찰서에 일시적으로 수용된 그런 사람들은 또한 엄밀하게 말하면 경찰서에 유치(구금)될 사람들이 아니다.

#### 2) 유치장근무 경찰관의 임무

유치장 감독 책임은 유치장근무 경찰관(Custody Officer)에게 있다.<sup>75)</sup>

#### (1) 유치장근무 경찰관의 지정

모든 지정된 경찰서에는 왕립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유치장근무 경찰관이 그 곳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근무 경찰관은 警察署長에 의해서 혹은 경찰서장의 업무를 위임 받은 경찰관에 의해 임명된다. 유치장 근무경찰관으로 임명된 경찰관은 반드시 최소한 警查계급 이상 경찰관이어야 한다.<sup>76)</sup> 그러나 PACE 제36조 4항에 따르면, 지정된 경찰서에서

71)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 先치료, 後비용지불이다. 대체로 비용은 치료 후 2개월 전후에 고지된다.

72) Zander, Michael, The Police And Evidence Act 1984(London:Sweet & Maxwell, 1990), p. 73.

7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의 줄임말.

74) Leigh, L.H., Police Powers in England and Wales(London: Butterworths, 1985), p. 101.

75) Leigh, 1985, p. 101.

76) 한국 경찰계급과 직접비교는 곤란하지만, 참고로 런던경찰청의 경찰관계급은 다음과 같다:

The rank structure of Metropolitan Police officers is as follows: **Commissioner**(경찰청장), **Deputy Commissioner**(부청장), **Assistant Commissioner**(국장)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부장) **Commander** (지방경찰청장) **Chief Superintendent**(총경) **Superintendent**(경정) **Chief Inspector**(경감) **Inspector**(경위), **Sergeant** (경사), **Constable** (순경).

“만약에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경찰관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면”, 유치장 직무를 수행할 경찰관이 경사급 경찰관이 아니라도 허용된다. 동법에서는 정기적인 구금시설로 이용되는 어떤 경찰서에서도 유치장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유치장근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근무 배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유치장근무 경찰관직무의 분리

일반적으로 수사업무에 관련되어 왔던 경찰관은 유치장근무 경찰관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sup>77)</sup> 조사결과에 따르면, 16개 경찰관서에서는 경사급 경찰관이 유치장근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38개 경찰관서에서는 유치장근무 경찰관에게 두 가지 기능-수사 및 유치장근무-을 요구하고 있었다.<sup>78)</sup>

동법 제 36조 5항에서는 지정된 경찰서에서는 수사업무와 유치장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유치장근무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직무도 그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어떤 범죄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일과 관련된 경찰관에 의해서 결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유치장근무 경찰관은 정복근무 부서에서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들이 범죄수사업무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경찰관들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sup>79)</sup> 그래서, 「시행령」과 일치되게, 유치장근무 경찰관이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수사경찰관에게 이송하거나 이송을 허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사관이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실시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용실에서 출소시켜 범죄현장에 대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치장근무 경찰관의 어떤 직무도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다.<sup>80)</sup> 그렇지만 이 원칙은 필요에 따라 또한 달리 시행될 수 있다.

유치장근무 경찰관은 동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피구금자의 신체나 의복에 대한 수색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용의자의 신원이나 의복에 대한 확인과 관련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피구금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채취라든가,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된, 예를 들면,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동조 6항에 의거한 호흡테스트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있다.

## V. 한국의 유치장시설 개선방향

### 1. 유치장내 危害요소 제거

77) Leigh, 1985, p. 101.

78) Zander, 1990, p. 74.

79) Leigh, 1985, p. 101.

80) Leigh, 1985, p. 101.

필자가 현지 방문한 독일, 미국 등의 구금시설에서는 화장실 변기재질로 모두 파손되지 않는 스테인레스(stainless) 재질의 변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참조). 한국의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내 변기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陶器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인 입감·출감시 일시 체류가능한 유치장 내부에 蘭草화분, 유리재질의 덮개, 집기류, 소형 소화기 등을 그대로 진열·비치하고 있다. 최근 정신병질자,<sup>81)</sup> 약물남용 피의자 등의<sup>82)</sup> 증가로 예기치 못한 위해요소가 우려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구금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유치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유치장내 질서유지 수단 확보

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족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경과 휴스턴 경찰청내 구치소에서는 所內 질서 문란자에 대한 징벌의 일환으로 독방감금 혹은 제지수단으로서 족쇄(Leg Iron)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시카고경찰은

▶피의자를 다른 지역으로 호송할 때

▶경찰서내에서 소란·난동을 부릴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등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족쇄 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에선 흉악범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갑옷형 족쇄를 온몸에 채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sup>83)</sup> 경찰상의 즉시강제 수단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경찰의 경우, 족쇄사용은 불법시 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sup>84)</sup>

징벌(懲罰)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속구(戒具)의 사용이다. 원래 계구(戒具)는 수용자(기결수 및 미결수·유치인 포함)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 이것이 사용되면 실제로 징벌효과가 있다고 한다.<sup>85)</sup> 계구의 종류로 포승, 수갑, 사슬(連鎖), 안면보호구 등 4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戒具는 懲罰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敘으로 정하되, 戒具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1) 1999년에 정신장애자범죄 인원이 3,100여명, 1998년 2,600, 1996년 2,800, 1995년 2,500여명이었다. 법무연수원, 「법 죄백서 2000」(용인: 법무연수원, 2000), 136면 이하.

8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용인: 법무연수원, 2000), 88면.

83) 중앙일보 1999년 02월 06일 30면.

84) 경찰청은 지난 1999년 3월 14일 일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에게 채워 온 「족쇄사용」이 인권침해라는 사회적 물의를 빚자, 이의 사용을 전면금지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경찰관과 관서장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규정을 1999년 5월 24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족쇄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수갑 및 총기사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장비사용 규정-「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1999.11.27 대통령령 제 16601호)을 제정하였다.

85) 박찬운/김선수 외, 1993, 40면.

그런데 유치장내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4가지 종류의 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장구에는 수갑, 포승 외에 계구의 일종인 사슬이나 안면보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유치인 징벌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재 유치장근무자의 휴대까지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6)</sup> 이를 징벌수단이 아니라 경찰상의 직접강제수단(unmittelbares Zwangsmittel)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치장내의 질서문란 및 안전을 위협하는 者에 대한 경찰상의 조치가 매우 미흡할뿐더러 실무차원의 법령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서조차 이러한 유치인징벌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인 유치인과 기결수인 구류형집행대상자가 유치장에서 행형법 제46조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 同法을 근거로 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sup>87)</sup> 뿐만 아니라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1991.3.14 법무부령 제349호」 역시 수형자, 미결수형자 및 감호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그 위반에 대한 징벌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인은 →미결수형자, 구류형집행대상자는 →수형자에 각각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同규칙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유치인 신체수색 문제는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안전문제 그리고 증거발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것인 바,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행형법 등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법상의 경찰권발동 혹은 경찰권개입, 개괄적 수권조항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3. 유치장관리 부서의 전향적 검토

필자가 살펴본 선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관리 운용부서를 보면,

▶독일은 방범순찰부서,

▶뉴욕시경 역시 지구경찰서 방범순찰부서,

▶휴스턴 경찰청의 경우는 별도의 Jail Division,

▶해리스 카운티(County)의 경우도 별도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Police Custody), 유치장근무 경찰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유니폼경찰관으로 충원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사급 이상의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구금계속 여부를 수사주무자가 아닌 독립적인 유치장근무 경찰관(경정급 이상)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미국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에서도 대체로 방범부서 혹은 별도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sup>88)</sup>

86) 뿐만 아니라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0조 ②에 의하면, "유치장내에는 경찰봉, 곤봉 등 일체의 계구를 비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행형법 第46條 (懲罰) ①收容者(수형자 및 미결수용자)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懲罰을 賦課할 수 있다. 1. 刑法·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등의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행위 2. 自害行爲 3. 정당한 이유없이 作業·敎育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凶器·酒類 등 許可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製作·소지·사용·授受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을 위반하는 행위 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警告 2. 1月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제한 3. 2月이내의 申請에 의한 作業의 정지 4. 作業賞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 5. 2月이내의 禁置

88) 경찰청 수사국, 「유치장, 바로 암시다」(서울: 경찰청, 2001), 41면.

한국의 경우 구금의 계속여부에 대한 심사를 전적으로 수사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있다. 수사목적으로 유치인을 수시로 조사, 입·출감시키는 관계로 유치인을 수사경찰관의 수중에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단계 구속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향후 유치장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7) 각국 경찰관서의 유치장 관리실태 비교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유치장관리부서	수사부서	순찰 혹은 전문부서 (수사부서는 아님)	순찰부서	수사부서와 독립된 정복부서
전문직원배치 여부	일반정복경찰	경찰관아닌 유치장전종 근무직원 배치	정복경찰관(24시간이후 구치소로신병이관)	전종 유치장근무 경찰 관배치
여성직원배치	배치안됨	전종여직원 배치	전종 여직원없으나 순찰부서 여경이 담당	여성경찰관배치
미결구금기간	● 영장발부前 48시간 ● 영장발부後 미결구금 통상 10일이내	● 영장발부前 24-48시간내, 보 통48시간, 법관구속심사까지 미결구금 ● 영장 발부 후 전문부서에서 6-12개월까지,	● 영장발부前 경찰서 24시간 이내, ● 영장발부後 구치소에서 12 개월까지 미결구금 가능	● 영장발부前 일반적인 최대 시간은 24시간 ● 심각한 범죄자는 36시간까지 피의자구금 허용
유치장 규모	경찰서별설치	● 뉴욕은 지구경찰서별 ● 휴스턴 및 해리슨카운티 경찰청: 중앙집중식 유치센터운용	지구경찰서별	
수용방식	혼거제	혼거제(2-4인 혹은 20이 상집단)	독거제	
직원근무방식	2-3교대	4교대	5교대	4교대
유치장입감시 신체수색	선별적 정밀신검사 신체외관 육안실시 (성기, 항문은 거의불가 능)	전면적 정밀신체검사 性器와 항문주변에 한 육안검사 실시	전면적 정밀신체검사 (성기, 항문육안검사가능)	성기(genital)와 항문 주변(anal areas)에 대한 육안검사 실시
신체검사단계	간이, 정밀신체			4단계: superficial, full, strip, intimate search(2인이상 참여)
신체수색한계	경찰청훈령	수정현법해석과 판례축적	행형법등	PACE 등
유치장감찰제도	검사주재	없 음	없 음	없 음
구치소 및 교정업무관할부서	법무부전담	경찰 상당부분 담당	법무부 전담	내무부산하

#### 4. 유치장 시설 등의 획기적 개선

각급 경찰서의 유치장 청사 건축시기가 상이한 바, 시설수준 역시 대부분 다르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기응변식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둘러싼 예산배정이 미흡하여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 향후 신축될 청사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행형원칙·분리수용, 거주설비, 개인위생,<sup>89)</sup> 의류 및 침구, 급식,<sup>90)</sup> 의료, 접견, 외부와의 교통, 종교, 도서, 시설직원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치장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유치장 기준

거주조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최저기준규칙」
제 10조에서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건강 유지에 필요 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 구체적으로는 기후조건, 공기량, 개인차지 최저면적, 조명, 난방,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에서는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통풍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도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않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구금자축에 입각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 7월 말 현재, 전국의 43개 교도소·구치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는 62,724명으로 정원 58,000명은 4천명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치소는 정원이 1,780명인데, 수용인원은 2,373명인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산하 교정시설내 수용 실태에 비하면, 경찰의 대용감방이나 유치장 수용실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실이든 공동실이든 그 면적은 사람이 起居動作하기에 필요한 최저기준에 달해야 할 것이다.<sup>91)</sup> 조명, 난방, 환기, 위생설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의류 침구, 식량, 기호품, 위생과 의료, 운동과 여가이용 등에 관해서도 현재의 수준은 개선되어야 한다.<sup>92)</sup>

최근 경찰청에서 부채꼴 형태의 유치장 구조변경, 유치실 전면 차폐막 설치여부, 화장실 차폐막 높이 기준 상향조정, 기타 인권친화적 유치장 환경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생활조건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sup>93)</sup>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는 유치인수에 비

89) 한국의 행형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 제 6장에 “위생과 의료”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위생 및 의료에 관한 몇 개의 원칙과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斷削이 원칙이며, 목욕 횟수는 所長이 정하되, 단 6-7월은 5일에 1회 이상, 10-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재소자의 운동은 1일 1시간이내가 원칙,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건강진단은 20세미만은 3월 1회 이상, 기타 수형자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구금실의 목욕시설, 샤워시설, 횟수, 시간이 절대 부족하며 전문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 부족하다는 여론임.

90) 식사와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음식의 맛(오스트레일리아 행형법)과 菜食주의자 및 종교상의 식사관습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행형부분)까지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함.

91) 사례에 의하면, 약 5평의 사방에 33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었다는 응답이 있을 정도이다. 同旨 박찬운/이승호 외, 1998, 23면.

92) 박찬운/이승호 외, 1998, 24면 이하.

93) 박찬운/김선수 외, 1993, 38면.

례하여 관련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치인 치료비 등의 비용문제에 대한 實費지급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 5. 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관리법」의 마련

연간 230,000여명의 피의자를 수감하는 230여개 경찰서 유치장 및 대용감방과 190만 여명의 피의자를 입건·수사시 실시하는 신체수색절차는 시민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94)</sup> 그런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 「행형법」, 「동시행령」이 준용되는가 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1개 조문, 경찰청훈령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근거로 법집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다.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권발동의 근거를 경찰작용법제 속에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對국민 기속력이 있는 법률적 형식이어야 한다.<sup>95)</sup> 다시 말하면, 유치장설치 및 운용의 근거, 유치인 입감 및 (간이 및 정밀)신체수색방법의 구체화 및 법제화, 신체수색 거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수단규정,<sup>96)</sup> 유치장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강제권발동의 구체화(난동 및 소란행위자 진압),<sup>97)</sup> 유치인 정별근거·절차·방법·한계, 계구 및 경찰장비의 재정비(사슬, 안면보호구 및 죽쇄 등 포함)<sup>98)</sup>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치인 권리구제수단 등에 대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던가(표: 참조), 경직법상의 【유치장】 관련조항 이하에 【무기사용】 규정처럼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표: 9) 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등관리법」 구상

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관리법」에는 유치장설치근거 및 시설기준, 근무경찰관의 직무범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입감 및 신체수색절차·방법, 유치인수용원칙(혼거 및 독거), 징벌절차·수단 및 한계, 유치인처우, 특히 구류형집행자인 경우 교정프로그램실시, 유치인권리구제절차, 경찰강제권발동 등 그 동안 여러 단행법규에 산재한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형식화함으로써 그동안 대국민 기속논란과 관련, 행정규칙의 한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직무의 근거를 경찰관계법에 규정함으로써, 타부처 소관법령의 근거를 준용해야 하는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同法은 경찰직무관련법과 행형법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6. 유치장 통합운영을 위한 「중앙유치센터」 적극 추진

유치장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이 좁거나 유치인 숫자가 적은 경찰

관서의 경우, 인접한 경찰서와 공동으로 유치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미국 휴스턴경찰청의 경우, 관내 2곳에 「집중구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찰청에서 개별유치장을 축소하고, 「중앙유치센터」 설치를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이는 인력<sup>99)</sup> 및 재원절감,<sup>100)</sup> 직무전문성 제고 및 인권보호차원에서<sup>101)</sup>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평가되며,<sup>102)</sup>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단위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 (표: 10) 가칭 「중앙유치센터」 구상

향후 「중앙유치센터」 설치시, 대도시관할 지방경찰청부터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지방경찰청 지청 소재지별로(동·서·남·북·중)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할만하다. 인력 및 재원절감과 직무전문성을 향상면에서 효과적이다. 일선경찰관서의 유치장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유치센터를 구체화한다면, 관리부서는 지방 청 직속하에 수사부서가 아닌 별도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찰관 뿐만아니라 교도관과 비슷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시킬 수 있다. 여성경찰관을 필히 배치하고, 최소한 교정기관에 상응하는 의료진(공중보건의,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구류형집행자를 위한 교정교화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03)</sup> 또한 긍정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내 다른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sup>104)</sup>

99) 유치장근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부서의 담당근무자 및 업무도 대폭 감소될 것이며, 피의자호송 등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장비 역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절감폭이 상당할 것이다.

100) 일선경찰관서의 유치장 대부분이 과소수용 상태이며, 개별경찰서별로 대당 4,500만원 상당의 금속탐지기를 전국 230여개 경찰서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엄청나다. 그리고 냉난방, 전기료 등 비용과 개별경찰관서 유치장 유지관리비가 집중관리함으로써 대폭 절감될 것이다.

101) 피의자유치와 관련된 인권침해성 시비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경찰관서 수사주무자가 수사편의상 수시로 피의자를 출감시키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영국 등 선진 각국의 사례처럼 수사부서와 독립된 부서에 관장한다면, 유치기간 동안 수사주무 경찰관에 의한 가혹행위를 비롯한 각종비위나 편파성시비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행사를 빌미로 일선경찰관서를 수시 점검하던 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02) 同중앙유치센터 설치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피의자의 신병이 사건발생 경찰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수사능률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 미국 경찰관서처럼 경찰관이 직접 중앙유치센터에 입장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단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휴스턴경찰청이나 해리스카운티경찰청처럼 관할구역이 서울보다 더 큰 경우에도 잘 실시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예상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103) 경남지방경찰청(수사과), 「업무혁신을 위한 광역 유치장 시범운영 결과」, 2005년 6월자 내부자료 참조.

104)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향후 광역유치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 한다.

○ 진해서 → 창원중부서 (10Km 15분)

○ 사천서, 하동서 → 진주서 (35Km 45분, 50Km 50분)

○ 고성서 → 통영서 (18Km 15분)

○ 창녕서 → 밀양서 (40Km 50분)

94) 경찰청내부자료(2005년 7월1일)에 따르면, 2003년도 236,149명, 2004년도 226,119명이 실제 경찰관서에 수용된 바 있다.

95) 행정규칙으로 법제화할 시 “대국민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없다는 판례를 상기해야 한다.

96) 피의자가 정밀신체검사 거부시, 혈행 법규로서는 이에 대한 강제신체검사가 거의 불가능한 설정이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상황은 경찰직무수행에 대한 수많은 쟁송을 야기시킬 수 있다.

97) 현재의 경찰청 지침으로는 악의적 유치장내 질서문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한 설정이다.

98) 매년 마약사범이 10,000여명 이상 입건되며, 정신병질자의 범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적절한 경찰장구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 (표: 11) 경남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 통합사례의 평가

- 통합대상 경찰관서<sup>105)</sup>
    - 산청경찰서 ⇒ 진주경찰서
    - 의령경찰서 ⇒ 함안경찰서
- ⇒ 통합운영
- 통합거리
    - 산청서 ⇒ 진주서(36km, 45분 소요)
    - 의령서 ⇒ 함안서(25km, 25분 소요)
- 인력조정
    - 피통합서
      - 산청서 : 유치인 보호관 1명 진주서 파견
      - 의령서 : 유치인 보호관 2명 함안서 파견
      - \* 여타 임여인력 4명은 수사부서 재배치
    - 통합서 : 파견 받은 인원만큼 차서 요원은 서 실정에 맞게 운용.
- 기대효과
    - 인력배치 불합리 개선으로 운용의 효율화 실현
    - 유치인을 보호했던 비능률적, 비생산적 소요인력 방지
    - 1개 유치장 통합시 최소한 6명의 임여 인력 확보
    - 임여 수사 인력확보로 수사 조사·형사 요원 보강  
(1개 유치장 통합시 최소한 6명의 임여인력 확보)
    - 유치인 보호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해소 3부제 실현
    - 광역유치장 확대 시행할 경우 경찰관 연 28,470명(78명) 임여인력 효과발생
    - 年 23억 4,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인력배치 불합리 개선으로 운용의 효율화 실현
    - 생산적이고 살아있는 수사활동으로 수요자 중심 치안행정 전개

## VI. 결 론

노동단체 소속원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시위와 관련, 발생한 이른바 “알몸수색”이 법원과 여론에 의하여 심한 질타를 받았다. 한 여성피의자의 끈질긴 법정투쟁을 통하여 전국 230여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의 칸막이가 높아지게 되었다.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에 대한 신체수색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가 하면, 유치장 시설 역시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흔히 경찰 3대 사고 중의<sup>106)</sup> 하나로 꼽히는 일련의

- 합천서, 함양서 → 거창서 (42Km 50분, 60Km 40분)

105) 해당관서별 반응: 피통합서에서는 지금까지 유치장이 비어있는 날이 많은 등 여유로운 분위기에 길들여져 현장 등 조사시 호송업무나 여타 수사부서 재배치근무 등 불편하다는 이유로 광역유치장 운영 도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임. 통합서에서는 기히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유치인 한 두 명이 더 있다하여 근무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닌 만큼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데 환영하는 분위기며, 특히 함안서의 경우 보호인력 부족으로 2부제 근무를 해오다 의령으로부터 지원 받은 인력으로 3부제 근무를 실현함으로써 유치인 보호관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다며 광역유치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임.

106) 경찰일선에서는 “유치장사고, 충기사고, 화재사고”를 경찰 3대 사고로 인식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유치장사고】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과 경찰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찰의 법집행 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관련 경찰관들과 경찰조직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경찰개혁의 연속선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경찰지휘관들의 관심과 의식개혁 덕분에 신속하게 개선,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국 경찰이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최근 몇 년 동안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조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기개혁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연간 190만 건 이상의 범죄가 경찰에 의하여 1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200여만명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00년 말까지 총 1,600만 여명의 시민이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관과 접촉한 바 있다.

특히 2004년 말 현재, 약 226,000여명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진 바 있다. 경찰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를 법익침해자, 비난받아 마땅한 者로만 평가하기에는 범죄문제가 너무나 일상화된 시점에서, 경찰에 대한 평가가 범죄피의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유치장을 “인권친화적 교화공간”으로 인식,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유치장내에 상존하고 있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유치인 신체검사의 실태를 개선하고, 유치장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소내 절서문란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유치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을 지양하고, 시설 및 인력배치 편차를 극복하고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중앙유치센터 혹은 광역유치장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유치장 관리부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할 것이다.
- 他기관협조업무로 맡고 있는 대용감방문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해소될 전망이기 하나, 실효성 있는 이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유치장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담여성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 유치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관리법」-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유치장 시설 및 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 나라의 인권수준과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교도소”와 “화장실”이 거론된다고 한다. 연간 230,000여 명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이야말로 경찰의 법집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찰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지만, 신장되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선진 각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많은 문제점이 잠복, 노출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국 내 문 헌】

- 경남지방경찰청(수사과). 2005년 6월 내부자료.  
경찰청(수사국). 2005년도 7월 내부자료.  
경찰청.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 서울: 경찰청, 2000.  
——.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서울: 경찰청, 2001.  
——. 「경찰통계연보 2000」. 서울: 경찰청, 2001.  
경찰청 수사국. 「유치장, 바로 암시다」. 서울: 경찰청, 2001.  
김용준·이순길. 「교정학」. 서울: 고시원, 1994.  
박경식.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200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재윤.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7.  
박찬운 등.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정」. 서울: 역사비평사, 199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용인: 법무연수원, 2000.  
사법연수원. 「미국형사법」. 서울: 사법연수원, 1999.  
석종현·신봉기. 「圖解行政法」. 서울: 박영사, 1990.  
이승호 등. 「한국 감옥의 현실-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서울: 사람생각, 1998.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법문사, 1994.  
이상희. "유치장내의 신체검사에 대한 비판과 대안" 「수사연구」. 2000년 12월호  
임준태.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 17집」. 용인: 치안연구소, 2001.  
장규원. "유치장관리개선을 위한 방향-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년 12월호  
장영민·박기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5.  
조국. "영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 「형사  
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 10호(1998).  
황정익. "유치장 설치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수사연구」. 2000년 12월호.

### 【외 국 문 헌】

- Cape, Ed/Luqmani, Jawaid. *Defending suspects at Police Stations: The practitioner's guide to advice and representation*. London: Legal Action Group, 2nd Ed., 1995.  
Del Carmen, Roland V.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actice*.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Knemeyer, Franz-Ludwig.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 1995.  
  
Girard and Leavell. *Police Procedure and search and Seizure*. Federal Way, WA.: Professional Police Publishers, 1993.  
  
Hess/Wroblewski. *Police Operation*. St. Paul and New York: West Publishing Company, 1997.

Höflich, Peter/Schriever, Wolfgang. *Grundriss Vollzugsrecht*, 2. Aufl., 1998.

Girad, Jim/Leavell, Ron. *Police Procedure & Search and Seizure*. Washington : Professional Police Publisher, 1993.

Johnson, Elmer Hubert. *Crime, Correction, and Society*.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1974.

Kleinknecht/Meyer-Goßner. *Strafprozeßordnung*, 43. Aufl., 1997.

Laubenthal, Klaus. *Strafvollzug*, 2. Aufl., 1998.

Leigh, L. H. *Police Powers in England and Wales*. London: Butterworths, 1985.

Moe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Patrol Guide*, 2000.

Reid, Sue Titus. *Crime and Crimin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5th E., 1988.

Rupprecht, Rheinhard. *Polizei Lexikon*. 2. Aufl., 1995.

Roberson, Cliff. *Criminal Procedure Today: Issues and Case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0.

Satzburg, Stephan A.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Commentary*. St.Paul, Minn.:West Publish Co., 1988.

Stone, Richard. *Entry, Search and Seizure: A Guide to Civil and Criminal Powers of Entry*. London: Sweet & Maxwell, 1997.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Jails in America: An Overview of Issues*. College Park,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5.

Krey, Volker. *Strafverfahrensrecht*, Bd. 1. 2. 1988.

Zander, Michael. *The Police And Evidence Act 1984*. London: Sweet & Maxwell, 1990.

Strafvollzugsgesetz (독일 행형법전)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전)

## 유치장의 시설환경 어떻게 개선해야 하니

손민영

(교도소 인권모임 연구원)

1. 유치장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2. 구금과 수사의 절저한 분리원칙을 입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3. 변호인 접견권 등 외부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신체검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유치장 시설환경 및 유치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7. 유치인 보호관 선정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8. 유치장 관리감독 및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유치장의 시설·환경,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sup>1)</sup>

손민영 (교도소 인권모임)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유치인 처우에 관한 사항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치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우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원칙이 없어, 심지어는 담당 근무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인보호관들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밀신체검사의 경우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신체검사 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세면, 목욕, 접팔, 일과 등 기본적인 생활부분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치장 피구금자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법·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유치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기존의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서술하기로 하고, 시설·처우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유치장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찰서 유치장 운영과 비교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 ① 유치장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 문제의 근원은 유치장 설치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를 수용하는 장소이며, 행정법 제68조에 의해 미결수용실에 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의 피의자, 미결수용자, 자유형 집행자 등 법적 신분이 다른 유치인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다. 또한 유치장 피구금자의 처우는 전적으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sup>2)</sup>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행정법을

1) 이 글은 본 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결론부분이다.

2) 경찰청은 지난 2003. 1. 25. 경찰청 훈령 제394호로 현행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신체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내용을 개선 또는 신설하였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규칙」 개정 이전 시점에 진행된 것인 바 개정 이전의 내용에 준하여 서술되었다.